

# 2020년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16.(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33, 13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19건(안건번호 제2020-71258호~7213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71258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해외 온라인서비스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국외에 서버를 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경우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주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구너 침해를 방조하는 링크 설정 게시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법해석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사안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71261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미국 애니메이션과 자막 파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71262호는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이메일로 음원 파일을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심의

대상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다수의 댓글이 달려 있어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1263호~7127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133회, 13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지난주 제3분과심의위원회는 제2020-133회, 134회 시정권고 심의를 진행하였음. 이에 총 두 회차의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절차를 진행하겠음.

먼저 제2020-133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OSP 명, 저작물명, 6쪽의 댓글 내용, 저작물명, 7쪽의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방송사명, 8쪽의 방송사명, 10쪽의 밴드명,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제2020-134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카페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인터넷 음악서비스명, 댓글 내용, 5쪽의 저작물명, 6~8쪽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9쪽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저작물명, 10쪽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11쪽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12쪽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

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각 회차 심의 회의록의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비식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B 위원: 제2020-134회 회의록 11쪽에 스토리지 관련 부분에 제가 사적인 장소에 저장해 두고 송신하는 것은 전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니 해당 발언 추가하여 회의록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11쪽에 발언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주셨음. 위원님의 해당 발언을 기재하도록 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인 제2020-133회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부분 중 OSP명, 저작물명, 댓글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방송사명, 밴드명,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또한 제2020-134회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부분 중 카페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인터넷 음악서비스명, 댓글 내용, 저작물명,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명,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권리자는 '영국 BBC one', '일본 후지TV', '이십세기폭스', 'tvN', 'OCN', '워너브라더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소니픽처스', '유니버설픽처스', '마블 스튜디오',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 중 제척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1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안전번호는 제 2020-71258호~7213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

음하겠음.

(심의안건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258호~71260호는 민원인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커뮤니티 사이트인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71258호는 불법복제물이 국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이며, 안건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임.

(안건번호 제2020-71258호 게시물에 접속하면서)먼저 제2020-71258호는 ‘☆☆☆☆☆☆’ 이용자가 하나의 게시물에서 해외 온라인 서비스인 ‘☆☆ ☆☆☆☆’에 저장된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68개를 제공한 사안임.

(링크를 클릭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내 링크를 클릭하면 ‘☆☆ ☆☆☆☆☆’로 연결됨. 이 클라우드에는 외국 애니메이션 ‘☆ ☆ ☆☆☆’가 mp4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되어 있음. 파일을 클릭하면 스트리밍 형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259호는 ‘☆☆☆☆☆☆’ 이용자가 하나의 게시물에서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인 ‘☆☆☆ ☆☆☆’에 저장된 미국 애니메이션 ‘☆☆☆ ☆☆☆ ☆☆☆☆☆’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20개를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71259호 게시물에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 ‘☆☆☆ ☆☆☆’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됨. 즉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국내에 있음. 링크 주소도 “☆☆☆☆☆☆☆☆☆☆☆☆☆☆☆☆☆☆☆☆☆☆☆☆☆☆☆☆☆☆”임. 게시물 내용에는 “☆☆☆ ☆☆☆☆ ☆☆☆☆ ☆☆☆ ☆☆☆ ☆☆☆ ☆☆☆ ☆☆☆ ☆☆☆ ☆☆☆☆-☆☆☆ ☆☆☆ ☆☆☆ ☆☆☆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임베디드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자체는 삭제되었지만 원천은 서버에 남아있으므로 URL 주소를 피가면 동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260호는 '☆☆☆☆☆☆' 이용자가 하나의 게시물에서 '☆☆☆ ☆☆☆'에 저장된 미국 애니메이션 '☆☆☆☆☆☆☆☆☆☆ ☆ ☆ ☆☆☆☆'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10개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71260호 게시물에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 '☆☆☆ ☆☆☆'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됨.

지난주 제3분과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국내에 있거나 불법복제물을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 보호원의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 전원과 사안 공유 및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음. 같은 문제의식으로 해당 안건 역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71258호~7126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국외에 서버를 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

고를 할 경우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원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인 경우 현실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링크 설정 게시물인 제 2020-71258호는 시정권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보호원의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이므로 부결 의견이나, 전차 회의에서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링크 설정 게시물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 역시 전체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전체위원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전번호 제2020-71258 호는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하더라도 해당 불법복제물은 여전히 서버에 남아있으므로 해당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다른 게시물의 링크들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이에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에 대해 부결 의견이나, 전차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안전번호 제2020-71258호는 해외 서버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5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게시물

의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 확정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261호는 민원인의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네이버 블로그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서)네이버 블로거는 2020. 6. 27. 미국 애니메이션 '☆☆☆ ☆' 시즌 2 13화에 우리말 자막을 삽입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이 애니메이션은 2019. 11. 29.부터 현재까지 미국 '☆☆ ☆☆☆'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srt' 자막 파일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7126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 정식 유통된 자막인지 아니면 게시자가 자체적으로 삽입한 자막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정식 유통된 자막일 가능

성은 낮고, 애니메이션 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막일 가능성은 있음. 본 건 자막은 마니아들이 동호회처럼 모여서 자막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른바 '팬서빙(fansubbing)'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등 자막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여럿 존재함.

- C 위원: 자막 제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저작권자가 애니메이션 시청자를 위해 한글 자막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본 건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정식 유통된 자막이 아닌 국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자막이 영상물에 포함된 사안으로 판단됨.
- C 위원: 국내 이용자가 많다면 저작권자는 자막을 판매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게임, 영화 DVD·블루레이 등은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용자는 우리말로 된 정식 서브타이틀을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TV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은 초벌 번역하여 수정한 자막 파일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막 파일일 것임.
- A 위원: 원어 자막을 구해서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불법복제물에 한글 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건이 많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호주, 스웨덴, 네덜란

드, 노르웨이 등 국가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제작자 또는 자막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음. '☆☆☆☆☆☆'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들은 무단 번역한 자막파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C 위원: 해당 블로그는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기 전에 한글 자막이 포함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불법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게다가 블로그에 누구나 접속하여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2분 55초 분량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한 편 전체 분량인 것으로 보이는데, ☆☆☆ ☆☆☆에 영상물을 업로드할 때 용량 제한은 없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동영상 용량 제한 없음. 영화 한 편 전체 분량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음.
- B 위원: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이견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1262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카페 ‘☆☆ ☆☆☆☆☆☆ ☆☆☆☆’ 이용자가 2020. 7. 8. “☆☆☆☆☆☆ ☆☆☆☆☆ ☆☆ ☆☆☆ ☆☆☆ ☆☆☆☆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본문에는 “☆☆ ☆☆☆☆ ☆☆☆ ☆☆ ☆☆☆☆☆☆☆☆”, “☆☆☆ ☆☆☆ ☆☆☆☆☆ ☆☆☆ ☆, ☆☆☆☆ ☆☆☆☆☆☆”, “☆☆☆☆☆☆☆☆ ☆ ☆☆☆☆ ☆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이메일 주소와 함께 “☆☆ ☆☆☆ ☆☆☆☆☆☆ ☆☆☆☆☆☆☆”, “☆☆ ☆☆☆☆☆☆☆”, “☆☆☆ ☆☆☆☆☆☆☆”와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2020. 7. 9. “☆☆☆ ☆☆☆☆ ☆☆☆☆☆ ☆☆☆ ☆☆☆ ☆☆☆☆☆☆☆☆☆ ☆☆☆☆☆☆☆, ☆☆☆☆☆ ☆☆☆ ☆ ☆☆☆ ☆☆☆☆☆☆☆”라는 댓글을 남겼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712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게시물 내용과 댓글 내용으로부터 게시자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저도 가결 의견임.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1263호~7127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게시자명, OSP명 등은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71263호~712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모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63호~7127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1278호~7213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설국열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1302호는 외국 드라마 '설국열차' 시즌 1 5화의 mkv 영상 파일과 smi 한글 자막 파일을 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이 드라마는

미국 'TNT'에서 2020. 5. 17.부터 방영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2020. 5. 25. 넷플릭스 공개하였음. 원작은 프랑스 만화 '설국열차'를 영화화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임.

(방송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50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외국 드라마 '애프터 라이프 앵그리맨' 시즌2를 2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드라마는 2019. 3. 8. 넷플릭스에서 시즌1 총 6개 에피소드를, 2020. 4. 24. 시즌2 총 6개 에피소드를 각 공개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smi 한글 자막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63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을 19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1993. 12. 24. 개봉하였는데 최근 이 영화 불법복제물 신고가 다수 들어오고 있음. 그 이유는 2020. 5. 1. 재개봉하였기 때문임. 재개봉 첫 주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함. 2020. 7. 14.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이고, 블루레이 판매가는 25,300원임.

(영화 '사라진 시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662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사라진 시간'을 20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18. 개봉하였고, 2020. 7. 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0. 7. 14.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게임 '커피 토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1823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커피 토크'를 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물은 2020. 1. 30. 출시되었는데, 정품 판매가는 13,500원임.

(SW 'Adobe Photoshop CC 2015 ~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0-7194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dobe Photoshop CC' 2020 버전을 21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이 소프트웨어 2020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 일자는 2020. 6. 15임. 권리자는 홈페이지에서 7일 무료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이용료는 한 달에 24,0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인증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게임 '112 오퍼레이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72125호는 게임 '112 오퍼레이터'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3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이 게임은 2020. 4. 23. 출시되었고, 정품 판매가는 26,000원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71278호~7213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B 위원,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71278호~ 72137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78호~7213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1259호~71260호는 사안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 2020-71258호, 제2020-71261호~7213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